

보도자료 (보도시점 12.7(수) 11:00부터)



정부 3.0

배포일시	2016.12.6.(화) 14:00	보도시점	2016.12.7.(수) 석간부터 [온라인 매체 12.7(수) 11:00부터]
담당과장	안전점검과장 황범순	연락처	044-205-4240
담당	행정사무관 허인수	연락처	044-205-4242
쪽수/붙임	3쪽 / 2쪽	대변인실	044-205-1223

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2월 6일부터 54일간 실시

- 안전취약 민간시설 집중점검, 지자체 점검역량 강화 -

-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6차 안전정책조정회의(위원장 :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)를 열고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.
 - 국가안전대진단은 2015년부터 2~4월을 집중기간으로 설정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선제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그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등 성과를 거두어 왔다.
- 시행 3년차를 맞이하는 내년에는 “선택과 집중”을 통해 취약시설 중심으로 안전점검이 보다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기간과 진단대상 규모를 조정하였다.
 - 올해 4월말까지 76일간이었던 추진기간을 내년에는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간으로 조정하고, 49만개소였던 진단대상 시설 수는 약 33만개소로 조정하였다.
 - ※ 전년대비 달라지는 점 등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
 - 특히 2월 중순에서 3월까지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빙기 기간으로 해빙기 안전대책과 연계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지자체 등 일선현장에서의 안전점검이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.

- 내년에는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상대적으로 공공시설에 비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시설을 집중 점검한다.
 - 건설현장, 화재취약지구, 유어장(해상펜션), 전통시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
 -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, 유지관리체계 등을 중점 점검하고, 안전사각지대를 발굴·개선할 계획이다
 -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.
- 점진적으로 지자체 중심의 안전진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.
 - 중앙부처에서는 교육워크숍 실시, 안전관리 컨설팅, 점검매뉴얼(체크리스트 등) 제작·배포, 장비·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의 안전점검 활동을 지원하고
 -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기동안전점검단을 설치·운영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.
 - 점검대상 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등급 C·D·E 시설, 해빙기 시설 등 노후화되거나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시설(7만여개소)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
 - 그밖의 일반시설(26만여개소)에 대해서는 교육, 홍보,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시설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
-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, 일자리 창출과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특수시책도 적극 추진한다.
 -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 안전 신고를 생활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한편

- 원전, 화학물질 등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.
 - 안전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안전신고 조사 등을 포함하고,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했던 대학생 안전점검단도 전 지자체로 확대·운영될 예정이다.
-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“안전사회 구현과 안전산업 활성화”를 목표로 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생활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”면서
- “앞으로 지자체의 안전점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” 고 밝혔다.

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
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 허인수 사무관(☎ 044-205-42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(안) 주요내용

- 기간 : '17.2.6(월) ~ 3.31(금), 54일간 * 설 연휴 : '17.1.27(금) ~ 1.30(월)
- 진단대상 : 33만개소(위험 7만개소, 일반 26만개소/공공 18만개소, 민간 15만개소)
- 추진방향
 - “선택과 집중”을 통해 취약시설 중심으로 안전점검 실시
 - ⇒ 기간 및 진단대상 규모 조정(76일 → 54일 / 49만개소 → 33만개소)
 - 점진적으로 지자체 중심의 안전진단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
 - 국민 참여를 통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사각지대 발굴·개선 추진
- 주요내용
 - 대형공사장, 유어장(해상펜션) 등 안전관리 취약 민간시설 집중 점검
 - * 민관합동점검단 구성, 안전규정 준수 점검 및 법·제도 개선사항 발굴에 중점
 - 안전점검 교육·컨설팅, 인력·장비 지원 등 지자체의 안전점검 역량 강화
 - * 지자체는 지역특색에 맞게 기동안전점검단 설치·운영
 - * 위험도에 따른 점검 차별화, 일반시설은 시설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유도
 - 안전신고 국민운동 전개, 기관별 테마형 제안공모 추진, 공익신고 유도 등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·개선
 -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, 안전산업 육성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특수시책 적극 추진
 - *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안전신고조사 등 포함, 첨단장비·기술 활용 확대 등
 - 이행실태 확인·점검, 안전점검체계 표본점검 등 안전점검 모니터링 강화,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이력관리 등 대진단 추동력 지속 확보
 - *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3년간의 국가안전대진단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 마련 추진

[참고] 전년 대비 '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달라지는 점

구 분	2016년	2017년
안전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안전사각지대 집중 점검 * 안전기준이 없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분야 * 안전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중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안전취약 민간시설 집중 점검 * 동일유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,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형공사장, 유어장(해상펜션), 화재취약지구, 전통시장 등 * 민관합동점검 실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중앙부처 주관으로 안전점검 실시 * 부처 자체적으로 점검대상 선정·시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지자체 중심의 안전점검 강화 * (부처) 점검대상을 지자체와 협의·선정, 교육·컨설팅, 장비·인력 지원 등 지자체에 대한 지원 강화 * (지자체) 기동안전점검단 운영
안전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참여 * 지자체 중심 ▶ 전문가의 기획신고 유도 * 원전 등 전문성이 있는 분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안전신고 국민운동 붐 조성 * 안문협 중심 자율적 네트워크 * 컨퍼런스, 기획홍보, 캠페인 등 ▶ 내부자의 공익신고 적극 유도 * 학회 및 전문가 단체와 협업체계 구축(MOU 체결, 간담회 개최 등) * 종사자 안전교육시 홍보 및 교육
법·제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민안전처에서 전문가·국민 대상 제안 공모 실시 ▶ 부처·지자체는 자체 발굴 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부처별로 소관 안전분야에 대한 제안 공모 실시 * 기간, 방법 등은 부처 자율 결정 ▶ 부처·지자체 자체 발굴(계속)
안전산업 육성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보수·보강 수요 창출 ▶ 안전산업 육성지원단 과제 이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일자리 창출 시책 적극 추진 *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안전신고조사 등 포함 * 지자체 대학생 현장점검단 확대 ▶ 안전기술 수요 발굴·상용화 지원
국가안전대진단 추진기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대진단 이행실태 점검 ▶ 관리시스템 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안전점검 모니터링 강화 * 이행실태 점검, 안전점검체계 점검 ▶ 점검결과 이력 추적관리 *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